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서

협약주체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협약주체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하 “기간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의 준수를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용자는 기간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 불합리한 차별 개선, 직업능력개발 세부내용을 준수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등은 기간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고충처리,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세부내용을 준수한다.
3.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등이 상호 협조하여 기간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제3조(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주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토록 노력한다.

1. 고액연봉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자의 능력·성과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 하고 경직된 연공서열을 타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과도한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가양득캠페인을 적극 실천하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지침을 적극 준수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2016년 11월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인 숙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 양 현